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¹⁾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나. 시·도등록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개발계획으로 인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예측·진단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이라는 문구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부에서의 개발계획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외부지역을 포함한 개발계획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에서도 개발계획부지 내에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을 고려하여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로 수정하기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였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 계획 협의) ① <u>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u> 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 계획 협의) ① <u>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u>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2. 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매장유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부칙의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음(주서본 참조).

Ⅲ.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는 개정안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가유산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도, 국가유산청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 개발계획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진단할 수 있어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임.

(전문위원 이 화 실)